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율방범대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60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7. 23.
3. 회부연월일 : 2025.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으로 삼되, 이미 치안·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청원경찰·의용소방대원 등은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생활범죄 예방, 취약지역 순찰,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서 그 기능이 민방위대 임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지만, 자율방범대원은 편성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의 민방위대 조직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자율방범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3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제18조(조직) ① ----- ----- -----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설>	13의2. 자율방범대원
14. ~ 18. (생략)	14. ~ 18.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민방위란 전시·사변 등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의미함¹⁾.

1)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이러한 민방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행법은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²⁾, 민방위대의 조직은 편성 의무자인 만 20~40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편성 의무자가 아니지만 민방위대 편성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에 해당하는 편성 지원자³⁾로 구성됨.

[2025년 민방위대 현황]

민방위대 : 84,022개		민방위 자원 : 3,284,912명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76,276개	7,746개	3,278,861명	6,051명

(자료 : 행정안전부)

현행법은 편성 의무자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직군에 속하거나 사유가 있으면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치안·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용소방대원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생활범죄 예방, 취약지역 순찰,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을

2)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 민방위대 편성은 매년 1월 10일 18:00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지역민방위대는 통·리 단위의 통·리대와 시·군·구별 주소지 단위의 기술대로 구분됨.

3)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과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지원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편성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자율방범대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이 본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에서 민방위대 편성의 예외를 두고 있는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직군 또는 사유는 민방위대와는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업무로서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어 민방위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것임.

[현행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 및 사유]

구 분	사 유
1.-3. (삭제)	-
4. 경찰공무원	민방위사태 시 고유 업무 수행 필요 ※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5. 소방공무원	민방위사태 시 고유 업무 수행 필요 ※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6. 교정직공무원	민방위사태 시 고유 업무 수행 필요 ※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정의)

구 분	사 유
7. 소년보호직공무원	민방위사태 시 고유 업무 수행 필요 ※ 보호관찰법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및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8. 군인	민방위사태 시 고유 업무 수행 필요 ※ 국군조직법 제4조(군인의 신분 등)
9. 군무원	민방위사태 시 고유 업무 수행 필요 ※ 군무원인사법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10. 예비군	민방위사태 시 고유 업무 수행 필요 ※ 예비군법 제2조(임무)
11. 등대원	민방위사태 시 고유 업무 수행 필요 ※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및 제5조(관리소 직원의 임무)
12. 청원경찰	민방위사태 시 고유 업무 수행 필요 ※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13. 의용소방대원	민방위사태 시 소방대 임무 수행 필요 ※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법 제7조(임무)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주한 외국군 부대 소속으로 고유업무 수행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 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민방위 임무수행 불가
16.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 ※ 도서벽지교육법 제3조(국가의 임무)제6호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병역의무 이행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및 제5조(병역의 종류)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병역의무 이행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및 제5조(병역의 종류)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학업 및 심신허약 등으로 민방위 임무수행 불가

(자료 : 행정안전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민방위대 편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방위대와는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업무로서 민방위사태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율방범대의 자율방범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활동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율방범대의 자율방범활동 범위]

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예를 들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의 경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필요가 높아지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자율방범대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는 민방위대의 활동을 통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와 별도로 수행되어야 할 고유한 업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의 경우 민방위사태 발생 시 지속적인 수행의 필요성이 낮고, 시·도경찰청장등이나 시·도지사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지속적 수행이 필요한 고유 업무로 보기는 어려움.

둘째, 자율방범대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설립되는 단체임⁴⁾.

반면, 자율방범대와 유사하게 치안·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직군 또는 단체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 청원경찰·의용소방대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구성 또는 설치된다는 점에서 자율방범대와 구분되는 측면이 있음.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자율방범대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 비교]

구 분	자율방범대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설치·구성	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자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청원주가 신청하고, 청원주의 임용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이 승인	시·도지사가 설치
임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자율방범활동)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특정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소집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부여되는 민방위대 편성 의무를 면제할지 여부는 그 단체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수행할 임무의 성격과 다른 자발적인 봉사활동 단체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자율방범대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단체로서 민방위사태 시에도 지속적으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이 아니며, 민방위 임무 수행이 곤란한 자로도 보기 어려워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청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방범활동, 재난 관리 등 치안활동을

5) 예를 들어,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자발적인 봉사활동 단체인데,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의 임무 중 교통통제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수행하고 있어 민방위대 임무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율방범대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⁶⁾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49

6)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민방위대 편성 대상이 되는 만 20~40세의 자율방범대원은 5,799명으로 추산됨.

[참고] 민방위대 임무 [시행령 제16조]

○ 평상시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재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의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